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최수진 · 박충권 · 구자근

김정재 · 김예지 · 성일종

김소희 · 배준영 · 서지영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사회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노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은 요양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노인에게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의 지원이 필요하고, 환자에게는 간병이 우선되어야 하는 차이가 있음.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간병인의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임.

이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2부터 제39조의2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2(간병인의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노인 또는 환자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업무를 하려는 사람에게 간병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간병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23에 따른 간병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간병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무시험 검증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병인 자격증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2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간병인의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3(간병인 교육기관의 설치) ① 간병인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24(간병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병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제39조의25에 따라 간병인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39조의25(간병인의 자격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간병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제39조의2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간병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9조의2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4의3. 제39조의2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병인 자격취득의 특례) ① 시·도지사는 이 법 시행 당시 간병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제3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병인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22(간병인의 자격증의 교부 등) ① 시·도지사는 노인 또는 환자 등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려는 업무를 하려는 사람에게 간병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u> <u>② 간병인이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23에 따른 간병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한다.</u> <u>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간병인 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무시험 검증하고 간병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병인 자격증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2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u> <u>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u>

<신 설>

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간병인의 교육과정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23(간병인 교육기관의 설치) ① 간병인을 교육하는 기관을 설치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간병인 교육기관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24(간병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간병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간병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7. 제39조의25에 따라 간병인의 자격이 취소(이 조 제3호에

<u><신 설></u>	<u>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u> <u>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1년이</u> <u>경과되지 아니한 사람</u> <u>제39조의25(간병인의 자격취소</u> <u>등) ① 시·도지사는 간병인이</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u> <u>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u> <u>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u> <u>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u> <u>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u> <u>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u> <u>우</u> <u>2. 제39조의24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u> <u>3. 간병인 자격증을 대여한 경</u> <u>우</u> <u>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u> <u>및 정지 처분에 대한 기준은</u> <u>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벌칙) ----- ----- ----- -----.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5. • 6.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39조의22제6항을 위반</u> <u>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u> <u>빌려주거나 빌린 자</u> <u>4의3. 제39조의22제7항을 위반</u> <u>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u> <u>리는 것을 알선한 자</u> 5. • 6. (현행과 같음)
---	--